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30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남인순ㆍ이수진ㆍ박주민

박홍근 • 문정복 • 장종태

채현일 • 민병덕 • 조승래

서영석 · 허종식 · 이정문

전현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, 안경·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 영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안경·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조의2제3호).

법률 제 호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"안경사"란 안경(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조제·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(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판매 및 관리, 안경·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행 아 혂 개 정 제1조의2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 제1조의2(정의) -----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"안경사"란 안경(시력보정용 3. "안경사"란 안경(시력보정용 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조제 • 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 (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렌즈(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판매 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판매 및 관리, 안경·콘택트 말한다. 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.